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신문의 범죄보도행태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 미국 및 네덜란드 신문의 비교*

박 광 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신문에 보도되는 범죄기사를 국가간·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신문이 다른 나라의 신문에 비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보도 양태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범죄보도 행태가 전통적인 법문화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보도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나 지침의 유형에 기인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동일한 시민법 전통을 가진 네덜란드, 한국과 법전통/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범죄피의자에 대한 언론보도 규정이 세밀하게 마련된 미국의 신문이 범죄사건을 보도하는 양태를 서로 비교하여 내용분석하였다. 세 국가에서 수집된 총 2813 개의 범죄관련 신문기사들이 1400여 개의 변인으로 코딩되었는데, 그중 피고인(용의자)에 관련된 핵심변인들 23 개와 피해자에 관련된 핵심변인들 8 개가 본 논고에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신문매체들은 다른 나라들의 신문들에 비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개연성이 높은 범죄보도양태를 더 심각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용의자)에 관련된 핵심변인들에서는 한국의 신문들이 미국과 네덜란드의 신문들과 매우 다른 범죄보도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과 네덜란드의 신문들은 서로 유사한 보도양태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신문의 범죄보도 양태는 법전통/문화보다 제도가 추구하는 법익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피해자에 관련된 핵심변인들에서는 세 국가의 신문들이 제각기 조금씩 다른 보도양태를 보여주었다. 범죄보도양태에서의 국가간 차이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 재판의 공정성, 언론보도, 내용분석, 국가간 비교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2000년도 선도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 광 배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청북도 청주시 개신동 산 48 번지
E-mail : kwangbai@cbucc.chungbuk.ac.kr

범죄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은 재판에 의해서 유죄가 인정되기 전에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형법원칙을 “무죄추정의 원칙(presumed innocence)”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범죄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재판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언론의 보도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호감도(likability), 동정심(sympathy), 범죄성(criminality), 등을 유발하므로써 재판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Hans & Dee(1991)는 범죄사건에 관한 신문기사들을 내용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신문기사들이 범죄 및 법체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매우 왜곡된 정보와 인상을 전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언론보도의 범죄사건 판단 양식은 1) 문제된 범죄사건과 관련된 행위가 사회구조적 요인이나 상황적 맥락 요인보다는 행위자의 개인 내적 특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합축이나 설명양식을 따르며, 2) 범죄사건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적(descriptive) 설명보다는 사건의 잘잘못과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규범적(normative) 설명 양식을 따르는 경향이 많고, 3) 범죄사건을 결과한 행위와 그 행위가 결과한 피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나 과정에 대한 기술은 소략하게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신문기사화되는 범죄는 대부분 심각한 것들인 경향이 있고(Doob, 1985), 일반적으로 검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목시적으로 용의자나 피의자가 이미 유죄임을 함축한다(Drechsel, Netteburg, & Aborisade, 1980; Hans & Dee, 1991; Ogloff & Vidmar, 1994; Otto, Penrod, & Dexter, 1994). 이러한 재판전 언론보도의 속성에 의하여 재판전에 불공정하고 편파된 인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판전 언론보도의 효과

범죄사실의 어떤 내용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는가에 따라 재판전 언론보도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Carroll, Kerr, Alfini, Weaver, MacCount, & Feldman, 1986). 특정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를 ‘재판전 특정정보(specific pre-

trial publicity)’라고 하고, 특정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를 ‘재판전 일반정보(general pre-trial publicity)’라고 한다. 강간살해의 현장모습을 보도하는 경우는 재판전 특정정보의 예라고 할 수 있고, 피의자의 전과사실에 대한 보도는 재판전 일반정보의 예이다. 재판전 특정정보의 범주안에 다시 ‘가증성 보도(heinous pre-trial publicity)’와 ‘단죄성 보도(pre-judgment pre-trial publicity)’라고 불리우는 보도유형이 있다. 가증성 보도는 범죄수법과 범죄현장을 매우 상세하게 보도하므로써 암암리에 범죄의 가증성을 부각시키는 보도유형을 말하고, 단죄성 보도는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은연중에 피의자나 용의자가 범인임을 암시하는 보도이다. 가증성 보도나 단죄성 보도는 피의자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재판전 특정정보의 효과

Costantini & King(1980/1981)은 실제로 발생한 세계의 범죄사건을 이용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조사연구에서 응답자들로 하여금 그 사건들의 피의자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는지 무죄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피의자에 대한 유·무죄 판결을 가장 잘 예측하는 독립변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문과 텔레비콘을 통해 습득한 응답자의 지식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즉,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건을 자세히 알고있는 응답자일수록 유죄라는 응답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Hoiberg & Stires(1973)는 재판전 특정정보의 두 유형, 가증성 보도와 단죄성 보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증성 보도는 강간살해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대략적으로 기술하므로써 실험조작되었고, 단죄성 보도는 피의자가 사건현장에 침입한 범인이라는 암시의 여부에 의해 실험조작되었다. Hoiberg & Stires(1973)의 모의재판실험에서 배심원들이 여성들로 구성된 경우, 가증성 보도나 단죄성 보도에 노출된(여성) 배심원들이 그러한 보도에 노

출되지 않은(여성) 배심원들에 비해서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평결을 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Sue, Smith, & Gilbert(1974)도 모의재판실험의 여성배심원들로부터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Sue et al.(1974)의 연구에서는 모의배심원들(mock jurors)에게 재판전에 그들에게 제시된 사건보도내용을 평결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지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배심원들은 여전히 재판전 특정보도의 영향을 받는 배심평결을 보여주었다. Padawer-Singer & Barton(1975) 그리고 De Luca(1979)도 위의 두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들에서는 재판전 특정보도의 효과가 특히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재판전 일반보도의 효과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의자의 전과기록이나 증거가치가 없는 자백 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물론 그러한 요인들이 일단 유죄판결을 받은 피의자의 형량선고를 위해서는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인가 혹은 유죄인가를 판단하는 판결에서는 전과의 여부, 성격적인 난폭성,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는 자백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Tans & Chaffee(1966)는 모의배심원실험에서 법정밖에서 기자들에게 행해진 피의자의 자백이 배심원들의 유죄평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임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피의자가 법정 밖에서 기자에게 행한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가치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백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Kline & Jess(1966)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모의배심원 실험에서 한 집단의 배심원들에게는 그 운전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는 텔레비전과 신문 뉴스를 보게 하고, 다른 한 집단의 배심원들에게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무관한 뉴스를 보여주었다. 그런 후 배심원들로 하여금 사고운전자에 대한 평결을 하게 한 결과, 사고전력에 관한 뉴스를 본 배심원들이 그렇지 않은 배심원들보

다 더 많이 유죄평결을 하였다. 특히 이 경향은 피의자의 사고전력에 대한 언론보도를 평결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평결지침을 준 경우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다. Hvistendahl(1979)는 여러 가지의 가상적인 범죄사건을 조작해낸 후 290명의 피험자들에게 각각의 범죄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유·무죄 판단을 시킨 결과, 이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중의 하나가 피의자의 전과사실임을 발견하였다.

Greene & Loftus(1984)는 재판전 일반보도(general pre-trial publicity)를 특정한 사건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일반적인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험연구에서 한 집단의 모의배심원들에게는 어떤 다른 사건에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범인을 잘못 지목하여 무고한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실화에 대한 뉴스를 보게 하고, 또 하나의 모의배심원집단에게는 그러한 뉴스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후, 그 모의배심원들은 어떤 범죄사건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실험과제를 수행하였는데, 그 사건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 평결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도록 조작되었다. 이 연구에서 앞서 잘못된 증인진술에 대한 뉴스를 보았던 배심원 집단은 다른 배심원 집단에 비하여 피의자에 대한 무죄평결을 내리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즉, 모의배심원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사안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재판사안에서 법이 불공정하게 집행되는 예를 언론보도를 통하여 간접 경험하므로써 자신들의 사안에서 보다 관대한 평결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Greene & Wade(1988)는 이러한 결과를 배심토의의 효과와 비슷한 이유로써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은 배심토의에 들어가기 전보다 토의를 마친 후에 피의자에 대하여 더 관대해진다고 한다(Gleason & Harris, 1976; Rurnsey, 1976). 그 이유는 배심토의가 배심원들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성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이유들(reasons to doubt)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사안과는 무관한, 그러나 매우 가증스럽게 자행된 범죄에 관한 뉴스를 접

하게 되면 자신들의 사안에서 더 엄한 (유죄) 평결을 내리게 될까? Greene & Wade(1988)는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가정의 근거로서 그들은 첫째, 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하는 판사들이 그렇지 않은 배심원들보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더 엄격한 견해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Kalven & Zeisel, 1968), 둘째, 배심경험이 많은 배심원일수록 유죄평결의 경향이 높아진다(Dillehay & Nietzel, 1986)는 실증적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증스럽게 자행된 범죄에 관한 재판전 일반보도가 당해 사건에서 평결을 더 엄하게 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한 근거로서 이 자료들은 다소 회의적이다. 가증스럽게 자행된 범죄에 관한 뉴스가 배심원들에게 만약 그러한 효과를 가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러한 뉴스가 범죄에 대한 감정적 동요와 공포심을 유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에서 Greene & Wade(1988)가 자신들의 가설을 위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 즉 판사와 경험이 많은 배심원이 경험이 적은 배심원보다 유죄평결을 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에 대하여 더 심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죄평결을 내리는 과제에 대하여 더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Greene & Wade (1988)의 실험에서 가증스러운 범죄에 대한 뉴스를 접한 배심원 집단이 그렇지 않은 배심원 집단보다 유죄평결을 더 많이 내리지 않았다.

양형에 대한 재판전 보도의 영향

Riedel II(1993)는 대학생 피험자들로 하여금 판사의 입장이 되어 가상적인 강간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판결(verdict)이 아닌 양형(sentence)을 하게 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집단의 피험자들은 재판전에 언론보도를 접하였고, 다른 한 집단은 그러한 언론보도에 노출되지 않았다. 재판전 언론보도는 두 가지로 조작되었는데 하나는 별개의 강간사건에서 강간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다른 한 명의 여자를 강간살해하였다는 신문기사였고, 또 다른 하나는 강간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 진

범이 나타나서 자백하였다는 기사였다. 강간을 범한 진범이 무죄로 석방된 기사를 읽은 피험자들은 자신들에게 양형이 맡겨진 강간범에 대하여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반면,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쓴 기사를 읽은 피험자들은 훨씬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였다. 이 연구는 비록 현역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전 일반보도가 유·무죄 평결뿐만 아니라 양형에도 편파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과 같이 모든 재판이 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재판전 보도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것인가? 판사들은 법전문가들이므로 재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과 고려되지 말아야 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보다는 재판전 언론보도에 의해서 영향받지 말아야 마땅할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고도의 훈련과 학식, 그리고 범수호의 철저한 양심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주재하고 최종판결을 하므로 언론보도의 편파적 영향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불행히도 세칭 “지존파”의 사례와 그밖에 무수히 많은 사례들은 한국제도에 대한 그러한 자신감에 대하여 회의론을 갖게하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고도의 훈련과 철저한 양심을 갖춘 한국의 판사라고 할지라도 언론보도의 편파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사법제도 자체와 구체적인 법적용이 범이념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의하여 굴곡되어 왔다는 역사적 배경에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을 떠나서 보다 미시적으로 심리화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한국의 판사들도 미국의 배심원들과 마찬가지로 언론보도의 편파적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이유는 알고있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둘째 이유는 최종판단에 대한 개별 정보의 역할을 판단자 스스로 간파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셋째 이유는 사전판단 혹은 예단의 심리적 영향이 의외로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넷째 이유는 판단자 스스로 자신이 편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미 기억체계 속으로 반입된 정보를 의식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그 정보는 더 명료하게 의식화되는 경향이 있다(Swann, Giuliano, & Wegner, 1982). 특히 이러한 기억의 반동효과는 그 기억이 생생하고 강한 감정반응을 수반하는 것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동차 밑에 깔려서 교통받는 사람을 목격한 경우, 끔찍한 장면에 관한 기억을 잊으려고 애쓸수록 더 생생하게 떠오른다. 판사가 재판전에 언론을 통하여 접한 정보들 중 법적인 가치가 없거나 법적판단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해야 할 정보가 포함된 경우, 특히 거대한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으킨 사건에서, 정의구현을 위해 투철한 양심을 가진 판사가 자신이 이미 알고있는 그러한 정보를 최종적인 법적 판단에서 배제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여도 그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는 다분히 회의적이다.

특정한 상황이나 타인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그 상황이나 타인에 대한 개별적 정보들이 기계적, 수학적으로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정보들에 의해 형성된 전체적 인상 혹은 전반적 평가에 의해 좌우된다(Pennington & Hastie, 1988; Schul & Burnstein, 1985).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관하여 긍정적인 평판과 부정적인 평판이 4:6 의 비율로 작용하여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 인상이 약간 부정적으로 형성되면, 나중에 그 부정적 평판중 몇 가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처음에 형성된 부정적 인상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차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처음에 형성된 부정적 인상에 의해 좌우된다. 법적인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편파된 정보라도 피고인과 그의 혐의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되고, 일단 그러한 전반적 인상이 형성되면 판사의 최종판결은 그 인상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일단 특정한 예단 혹은 사전판단이 형성되면, 그 사전판단이 차후에 수집될 정보의 선택, 주의력의 배분, 정보의 의미해석, 그리고 기억될 정보와 망각될 정보의 선별을 주도한다

(Bodenhausen, 1988; Hamilton et al., 1990). 재판전 언론보도에 의해 판사의 마음속에 부지불식간에 예단이 형성되면 재판과정에서 그 예단에 부합하는 특정한 종류의 증거를 선별적으로 취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 상반된 증거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도외시될 수 있으며, 수집된 증거의 의미해석에도 미묘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서 상사가 여직원에게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속옷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묻었다고 가정하자. 그 상사에 대한 예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상사의 질문은 음탕한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선물할 품목을 정하기 위하여 여직원의 의견을 탐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예단이 형성되면 그 예단에 걸맞는 정보는 기억되고, 그 예단과 상반되는 정보는 망각되기 쉽다. 만약 직장상사가 음탕한 성격을 가졌다고 예단되면, 그 상사가 여직원에게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속옷스타일뿐만 아니라 구두스타일에 대해서도 물었었다는 사실은 매우 쉽게 간과되거나 잊혀진다.

재판전 언론보도의 가장 큰 위험성은 그러한 언론보도에 의해 편파된 예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편파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편파를 본인이 인지할 수 있고, 또한 공정한 법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꺼이 인정한다면,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voir dire 절차 등은 매우 효과적으로 언론보도의 부당한 영향력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voir dire 절차의 비효율성을 일관되게 거론하는 것은 voir dire 절차가 기본적으로 편파된 배심원들이 자신의 편파성을 정확히 지각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진솔하게 인정한다는 가정에 기초하는데, 이 가정은 매우 위험한 가정이기 때문이다. Johnson(1994)의 연구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관련된 정보 전체의 부당성 혹은 편파성은 비교적 쉽게 인지하지만, 관련된 정보가 많은 가운데 일부의 정보가 초래하는 편파성은 간과하지 못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피고인에 대한 기소내용이 전반적으로 과장되거나 허위일 때는 최종판결에서 그러한 과장성과

허위성을 능히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재판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정보들 속에 끼어있는 특정한 소수의 정도가 초래하는 편파성은 우선 판단자 스스로가 간파하기 어렵고, 설혹 간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심리적 영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의 내용분석과 국가간 비교의 의의

위에서 개판된 바와 같이, 언론의 범죄보도 양태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실험방법에 의하여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이 주제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방법은 생태계적 타당도(ecological validity)가 의심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진다. 실험연구들이 가지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Steblay, Besirevic, Fulero, & Jimenes-Lorente(1999)은 44개의 실험연구(총 5755명의 피험자)를 메타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① 전체적으로 실험연구들은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언론의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② 현실세계에서 배심원으로 재판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피험자로 사용한 연구에서 언론의 영향이 더 크게 산출된다; ③ 언론의 영향을 여러개의 변인으로 조작정의한 경우가 한개의 변인으로 조작정의한 경우보다 언론의 효과가 더 크게 포착된다; ④ 실제 존재했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실제의 언론보도를 실험재료로 사용한 연구들에서 실험재료를 조작해낸 연구들에서보다 언론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⑤ 피험자가 사건에 대한 재판전 언론보도에 노출된 시점과 그 사건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이 길수록 언론보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⑥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일수록 사건 전반에 관한 보도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

Steblay, Besirevic, Fulero, & Jimenes-Lorente(1999)의 메타분석이 시사하는 것은 현실세계에서의 언론보도를 보다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연구에서 재판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의 범죄사건에 대한 실제의 언론보도의 내용을 분

석하여 그 내용들이 재판결과에 영향줄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실험연구들의 결과를 해석하고 실제 현실세계로 일반화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Imrich, Mullin, & Linz(1995)는 8 주간에 걸쳐서 발간된 14 개의 미국 신문들을 내용분석하여 미국변호사 협회가 규정한 보도금지사항(American Bar Association, 1983)이 신문에 보도되는 빈도를 파악하였는데,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서 국가간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국가간 비교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재판에 대한 언론보도의 불공정한 영향은 특정한 법제도와 법문화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하고, 배심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큰 차이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각 국가의 언론매체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보도관행이나 보도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에 대한 법제도

한국의 법은 유럽대륙의 시민법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민법은 특수한 사회지도계층의 계몽적 역할을 강조하고 성문화된 법률의 표준화된 법적용을 중시한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은 다년간 법을 공부해온 전문가 즉, 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재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실과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판사들은 재판전 언론보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언론보도의 내용으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판사에 의해 독점되는 시민법 전통을 따르는 한국에서는 언론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이념적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언론의 '편파적' 영향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언론은 재판전 범죄보도에서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편파적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많고, 예단에 의한 단죄

성 보도나 범죄의 가중성을 부각하는 선정적 보도를 하는 경향이 높다.

한국의 제도

한국의 경우, 범죄피의자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금지하는 명시된 규정은 소년법의 “장래성(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그의 이름과 연령, 성별, 사진 등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다(소년법 제 61조 1항). 또한 대한민국 형법 제 307 조 - 제 312 조는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는 이 형법조항들에 근거하여 법원은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혐의와 함께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에 관한 기사는 범죄 혐의자 및 관련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익명보도주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형법 제 310조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실도 포함된다고 본다. 즉,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보다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범죄행위를 보도하는 것이 시사에 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고 여론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기사작성상 불가피하거나 범행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중대성 때문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로 할 경우,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갖는 범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적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가 그런 예외적 경우이다(권순택, 2000)¹⁾.

1) 미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한국의 법원은 범죄사건에 대한 여론형성과 대중적 해설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밖에 몇 가지 규정과 지침들이 동 소년법과 형법의 취지(피의자의 장래성과 명예보호)에 근거하여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4월 27일에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구속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권아무개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5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당시 경찰서 형사계장이 기자들을 불러 놓고 권씨 등이 변사사건의 범인이라고 발표하는 등 충분한 증거없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의사실이 공표돼 신문 사회면에 기사화하고 결국 권씨 등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2000년 4월 27일, 김창석 기자).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형법에 존재하는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 126 조)”의 범리도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²⁾.

그러나 한국의 법제도에는 언론보도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언론보도에 적용되는 성문화된 규정이나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³⁾. 예를 들어, 피의자 성격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평판이나 전과기록 등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피의자가 진범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정보이지만, 그 정보들이 알려졌을 때는 판결에 대하여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Kramer et al., 1990; Linz & Penrod, 1992; Humphries, 1981), 한국의 현행

2) 피의사실공표죄는 언론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이 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것이다.

3) 본 논고에서 다루는 언론의 효과는 정확한 보도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즉, 보도내용은 정확한 진실이지만, 그것이 재판의 공정성에 편파적 효과를 주는 경우에만 본 논고의 내용이 적용된다. 부정확한 보도의 편파적 효과는 본 논고의 논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법제도에서는 그러한 사실정보가 재판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통제하는 장치가 전무하다.

미국의 제도

미국의 경우, 범죄사실의 보도시 특정한 유형의 정보는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언론에 의한 공개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미연방 형사소송법 21 조 a 항(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21(a))은 지역의 편파된 여론으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재판장소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소가 성립된 지역내의 법이 정한 특정한 장소에서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예단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법원은 피고가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재판장소를 이전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자백여부, 전과기록, 주위평판 등도 미국이 언론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미국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게 된 이유는 법전통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법체계는 보통사람들의 가치관과 판단을 중요시하는 보통법의 전통에 따르며, 각계각층의 평범한 사회구성원들 가운데서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단이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원제가 재판방식으로 주로 채택된다. 배심원제에서 피의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의 몫이며 판사는 다만 재판을 주재하는 중립적인 감독관으로서 증거의 증거력이나 법적효력에 대하여 배심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판사의 교육과 주의에도 불구하고 비법률전문가인 배심원단은 재판전 범죄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돼왔다. 예를 들어, Moran & Cutler(1991)는 범죄피해자 가족의 비통함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읽은 배심원들은 그렇지 않은 배심원들보다 피고인에 대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재판전 언론보도의 편파성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195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판례 (Sheppard v. Florida (341 U.S. 50[1951], 71 S. Ct. 549 [per curiam])) 이후, 미국에서는 언론의 편파적 영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미연방 사법심의위원회와 미국 변호사협회는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정보를 언론에 공개치 못하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두게 되었다. 미연방 사법심의위원회와 미국 변호사협회가 언론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은 1) 피고인의 전과사실, 2) 피고인의 성격과 평판, 3) 자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행한 모든 진술, 4) 피고인에게 실시된 모든 종류의 검사나 테스트 결과와 피고인의 피검수락 여부, 5)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자인홍정 가능성, 6)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일체의 개인적 의견 및 소견이다. 이러한 규정 외에도 미국 법원은 재판사실 유출금지 명령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로 하여금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사실이나 재판사실 등을 언론에 공개치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제도

보통법전통을 따르는 미국과 달리, 네덜란드의 법체계는 유럽대륙의 시민법전통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성문화된 법률의 표준화된 법적용을 중시하고, 피의자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은 다년간 법을 공부해온 전문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달리 네덜란드에서는 재판전 언론보도가 판사의 선고에 미치는 영향을 일찍이 인식하여 미국의 사법심의위원회나 변호사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언론보도 금지사항을 두고 있다: (1) 범죄사건에 대한 경찰 혹은 검찰의 발표는 오직 사실(fact)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사실로부터 유추된 결론 등을 발표하여서는 안된다(The statements given by the police and prosecutors should be based on the facts of a particular investigation, without any qualifying conclusions); (2) 용의자의 개인적 상황이나 사건의 정황이 범죄와 명백한

관련성이 있지 않은 한, 용의자의 국적, 인종, 혹은 성적 취향 등의 정보를 보도하여서는 안된다 (Statements should not contain information about the personal or functional circumstances of the suspects in particular, nationality, ethnic background or sexuality, unless there is an evi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ircumstances and the crime); (3) 생활환경 속에서 용의자의 신분이 파악될 수 있는 연령, 직업, 등의 어떠한 정보도 보도되어서는 안된다 (The personal details of a suspect (initials, age, employment) should be given in such a way that the suspect will remain unrecognisable in his own environment); (4) 피해자, 피해자의 친인척, 목격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가 언론에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In order to avoid publicity concerning their identity, information about victims, relatives and witnesses should not be given to the media); (4) 언론은 용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법정 절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보도하여서는 안된다 (The media should not get any information about decisions during the process, until the

suspect has been duly informed).

법문화와 법제도의 국가간 차이

언론보도에 관한 법제도는 한국, 미국, 네덜란드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축되어 있고, 따라서 그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 세 나라의 법제도를 대비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법체계는 유럽대륙의 시민법전통을 따르고 있고,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도 성문화된 법률의 표준화된 법적용을 중시하고, 피의자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은 다년간 법을 공부해 온 전문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달리 네덜란드에서는 재판전 언론보도가 판사의 선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여 미국의 사법심의위원회나 변호사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언론보도 금지사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 네덜란드, 미국의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기사를 비교하면 한국의 언론보도행태, 즉 재판

표 1. 언론의 범죄보도에 관한 법제도와 법문화의 비교

	한국	미국	네덜란드
보도금지 법규정	이름 성별 사진	전과사실 성격과 평판 진술 (자백) 검사/테스트 결과 자인홍정 제 3자의 소견	유추된 결론 국적 인종 성적 취향 연령 직업 피해자 신원 피해자 친인척 신원 목격자 신원 법적 결정
법규정의 목적	혐의자의 명예보호	재판의 공정성 보호	재판의 공정성 보호
법전통/문화	시민법	보통법	시민법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완비	완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피의자나 피해자에 대한 특정 유형의 보도가 법전통/문화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언론보도에 대한 제도적 규정/지침의 유무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범죄보도기사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두 나라 보도행태가 모두 한국의 보도행태와는 다르다면 이는 언론보도에 대한 규정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네덜란드와 한국의 범죄보도기사간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 두 나라의 보도행태가 다시 미국의 보도행태와 차이가 있다면 이는 법문화 내지는 법전통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신문기사의 선정

네덜란드에서는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전국일간지 10 개를 선정하여 연속 4주간(1997년 12월) 보도된 범죄기사와 재판관련기사를 내용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5개 주를 무작위 표집하고, 그 5개 주에서 발

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을 10개 선정하여, 연속 8 주간 1998년 2월 - 1998년 3월) 보도된 범죄기사와 재판관련기사를 내용분석하였다. 한국에서는 전국일간지와 지방지 8개를 선정하여 연속 4주간(1999년 9월) 보도된 범죄기사와 재판관련기사를 내용분석하였다.

세 개의 국가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신문기사들의 보도시점을 각기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각 국가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유발하는 사건이 없는 시기를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엽기적이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존재하는 시기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도가 모든 언론의 범죄보도내용을 모두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평소의 언론의 범죄보도행태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네덜란드와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각각 주목할만한 큰 범죄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선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난 신문기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네덜란드와 한국의 신문들로부터는 조사기간중에 보도된 범죄기사가 모두 발췌되었고, 미국의 신문들로부터는 조사기간중에 보도된 모든 범죄관련기사들 중 일부가 무작위로 발췌되었다. 각 나라에서 내용분석된 신문들과 발췌된 범죄기사의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나라에서 내용분석된 신문들과 발췌된 범죄기사의 수

	네덜란드	미국	한국
선정된 신문명	Algemeen Dagblad NRC Handelsblad De Volkskrant De Telegraaf Trouw Her Parool Haagsche Courant De Limburger Nieuwsblad van het Noorden De Gelderlander	Asbury Park Press Boston Globe Boston Herald Courier-Post Patriot Ledger The Record Star Ledger The Times Telegram & Gazette Union New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충청일보 동양일보 중도일보
발췌된 기사수	1403	667	743

변인

선정된 범죄/재판관련 기사들에 대하여 기사의 제목에 관련된 내용(제목의 활자크기, 제목에 명시된 내용, 등), 사진에 관련된 내용(사진의 출처, 사진의 크기, 등), 그리고 기사본문에 관련된 내용(기사의 단어수, 신문면에서의 기사위치, 등)을 총 1400여 개의 변인으로 코딩하였다(대부분의 변인들은 “있음-없음” 등으로 코딩된 이분변인들이다). 본 논고에서는 언론의 범죄보도에 관하여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만을 보고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고에서 보고되는 자료는 모두 신문기사의 본문속에 나타난 사항들에 관한 것이며, 기사의 제목이나 사진에 관련된 사항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사의 본문에 관련된 내용은 약 600여 개의 변인으로 코딩되었다. 본 논고에서 보고되지 않은 변인들에 관한 자료들은 다른 기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본 논고에서는 범죄기사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 중에서 선별된 33개의 변인들에 관한 자료가 보고되었다: 범죄유형, 기사유형, 피고인(용의자) 이름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 성별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 연령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기타 인적사항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구체적인 사생활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전과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여죄에 대한 의구심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이나 묘사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죄목의 명시 여부, 범행장소(위치)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보석방여부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예상되는 처벌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정신감정 혹은 거짓말 탐지기 등의 검사결과에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위협성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정당방위성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자기변호(합변)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자백여부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묵비권 행사여부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유죄성에 대한 주장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결백성에 대한 주장의 명시 여부, 피고인

(용의자)의 승소가능성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의 패소가능성의 명시 여부, 피고인(용의자)과 피해자의 합의가능성의 명시 여부⁴⁾, 피해자 이름의 명시 여부, 피해자 성별의 명시 여부, 피해자 연령의 명시 여부, 피해자의 기타 인적사항의 명시 여부,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생활의 명시 여부,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사실의 명시 여부,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이나 묘사의 명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비난(blaming)의 명시 여부.

기록자 훈련과 신뢰도

네덜란드의 신문기사들은 네덜란드에서, 미국의 신문기사들은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의 신문기사들은 한국에서 각각 자료화되었는데, 자료화의 일관성을 위하여 각 나라의 책임연구원들이 1998년 여름에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회동하여 코딩원칙을 확정하였다. 신문기사를 읽고 내용을 자료화하는 기록자들은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는 모두 심리학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대학원 재학생들 중에서 선발되었고, 한국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과 대학교 4학년 학생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록자들의 수는 각 나라에서 각각 40-50 명이었다.

발췌된 신문기사들을 코드화하기 전에 소수의 변인들을 정하여 그 변인들에 대한 기록에서 기록자들의 일치도를 검증하였다. 기록자간 일치도는, ① 각 나라의 기록자들이 확정된 코딩원칙에 대하여 훈련

4) 미국과 네덜란드의 형사소송법에 포함되어있는 자인홍정(plea bargaining) 제도는 한국의 형법에는 없는 제도이다. 자인홍정은 피고인이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하면 검사가 그 댓가로서 특정한 구형을 감한다거나, 고소 내용의 일부를 취하하는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다만, 한국에서 소위 '합의'라고 불리우는 관행이 이 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이므로 한국신문의 경우에는 합의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미국과 네덜란드의 자인홍정에 준하여 코딩하였다. 한국 사법제도의 한가지 관행인 '합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하지 않고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재하여 이루어지는 한국의 합의와 판사의 개입없이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미국과 네덜란드의 자인홍정은 매우 다른 법이론적 근거를 가진다.

을 받은 후, ② 각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선정된 10 개의 동일한 신문기사들을, ③ 역시 각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선정된 10 개의 변인들에 대하여 그 나라의 기록자들이 동시에 코딩한 후, ④ Cohen의 κ (kappa)를 이용하여 두 사람의 기록자간 일치도를 파악하였다. 세 개의 나라에서 신문기사의 자료화에 참여한 기록자의 수가 각기 다르고, 각 나라에서 선정된 신문기사와 기록변인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두 사람의 기록자간 일치도(Cohen의 κ)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 네덜랜드는 0.73, 미국의 경우 0.74, 한국의 경우 0.69로 나타났다.

한 사람의 기록자의 기록을 여러 사람의 기록자들 각각에 대하여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일관되게 낮은 일치도를 보이는 기록자에 대해서는 추가적 훈련을 실시한 후 실제 신문기사들을 자료화하였다. 새로운 신참 기록자가 참여하는 경우, 기록자 일치도를 검증할 목적으로 미리 선정되었던 신문기사를 역시 미리 선정된 10개의 변인들에 대하여 코딩하도록 하고, 그것을 기존의 기록자들의 코딩자료와 비교한(두 사람간) 일치도를 산출한 후, 기존의 기록자들과 일관되게 낮은 일치도를 보이는 기록자에 대해서는 추가적 훈련을 실시한 후 실제 신문기사들을 자료화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의 주된 목적은 위에서 설명한 신문기사변인들에서 네덜랜드, 미국, 한국의 신문들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변인들을 크게 “피고인(용의자)에 관한 내용”과 “피해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한 후, 각 개별변인에 대한 분석과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도된 범죄유형

신문에 보도되는 범죄유형에서 몇 가지의 국가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3>을 보면, 네덜랜드와 미

국의 경우에는 살인, 절도/강도, 등의 강력범죄에 관한 기사들이 비교적 높은 빈도로 보도되는 반면, 한국의 신문들에서는 강력범죄에 관한 기사의 빈도가 다른 종류의 범죄들에 관한 기사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도되는 빈도가 가장 높은 범죄는 미국신문의 경우에 살인(24.9%)이고, 네덜랜드의 경우에 절도/강도 (26.4%) 이다. 그런데, 이 강력범죄들은 한국신문의 범죄기사들 중 각각 5-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신문들은 횡령, 탈세, 뇌물 등의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기사들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기사는 조사된 전체 범죄기사의 1.5%에 불과하고, 네덜랜드는 6.8%인 반면, 한국의 범죄기사들 중에 20.8%가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기사내용의 유형

신문의 범죄기사가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기 전이거나 재판중에 보도되는 범죄기사이다. 따라서 세 국가의 신문들에 보도되는 범죄기사들을 재판전 보도, 재판중 보도, 그리고 재판후 보도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기사수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피고인(용의자)에 관한 내용

각 변인의 빈도와 비율의 해석은 대부분 국가와 신문기사변인으로 구성되는 2×3 이원교차분할표에 기초한 것인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3×2의 삼원교차분할표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삼원교차분할표는 해석이 복잡하므로 표를 제시하는 대신 중요한 양상을 본문중에 기술하였다.

신문기사의 본문내용 중에서 피고인(용의자)에 관한 내용들이 <표 5>와 같이 집계되었다. <표 5>의 () 안의 비율은 각 국가에서 분석된 신문기사의 전체 갯수에 대한 비율이며, 네덜랜드의 경우에는 1403, 미국은 667, 한국은 743에 대한 비율이다. 아래에

표 3. 범죄유형별 기사의 수

범죄유형	네덜란드 (%)	미국 (%)	한국 (%)
살인	256 (18.2)	152 (24.9)	38 (5.1)
살인미수	29 (2.1)	23 (3.8)	11 (1.5)
폭행	152 (10.8)	67 (11.0)	35 (4.7)
강간/성폭행	41 (2.9)	35 (5.7)	21 (2.8)
절도/강도	371 (26.4)	74 (12.1)	48 (6.5)
유괴	17 (1.2)	5 (0.8)	2 (0.3)
방화	29 (2.1)	5 (0.8)	13 (1.8)
기물파손	24 (1.7)	4 (0.7)	6 (0.8)
사기	64 (4.6)	14 (2.3)	58 (7.8)
마약소지	24 (1.7)	25 (4.1)	2 (0.3)
마약판매	59 (4.2)	11 (1.8)	4 (0.5)
마약운송	54 (3.8)	2 (0.3)	1 (0.1)
불법무기	10 (0.7)	4 (0.7)	26 (3.5)
아동학대	64 (4.6)	8 (1.3)	0 (0.0)
아동방임	0 (0.0)	1 (0.2)	2 (0.3)
탈옥	11 (0.8)	1 (0.2)	0 (0.0)
화이트칼라 (횡령, 탈세, 뇌물 등)	95 (6.8)	9 (1.5)	154 (20.8)
기타	103 (7.3)	227 (34.0)	322 (43.3)
전체	1403 (100.0)	667 (100.0)	743 (100.0)

표 4. 기사내용의 유형

기사내용의 유형	네덜란드 (%)	미국 (%)	한국 (%)
재판전 보도	920 (65.5)	385 (63.4)	665 (89.5)
재판중 보도	237 (16.9)	72 (11.9)	25 (3.4)
재판후 보도	226 (16.1)	112 (18.5)	48 (6.5)
기타 (합의, 재심판, 등)	20 (1.4)	38 (6.3)	5 (1.0)
불분명 (missing)	0	60 (9.9)	0
전체	1403 (100.0)	607 (100.0)	743 (100.0)

주: 미국의 경우 60 개의 기사에 대하여 내용유형의 결측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전체빈도가 667 이 아니라 607 이다.

표 5. 피고인 (용의자) 에 대한 변인내용이 명시된 신문기사의 수

변인	네덜란드 (%)	미국 (%)	한국 (%)	$X^2_{df=2}$
1. 이름	410 (29.2)	546 (81.9)	362 (48.7)	504.41**
2. 성별	1091 (77.8)	515 (77.2)	146 (19.7)	781.24**
3. 연령	722 (51.5)	455 (68.2)	492 (66.2)	72.44**
4. 기타 인적사항	572 (40.8)	94 (14.1)	642 (86.4)	775.73**
5. 사생활	483 (34.4)	249 (37.3)	7 (0.9)	336.40**
6. 전과	56 (4.0)	85 (12.7)	18 (2.4)	84.69**
7. 여죄혐의	35 (2.5)	42 (6.3)	64 (8.6)	41.23**
8. 부정적 사실/묘사	41 (2.9)	110 (16.5)	23 (3.1)	160.06**
9. 죄목	1373 (97.9)	642 (96.3)	734 (98.8)	10.41**
10. 범죄장소	1038 (74.0)	416 (62.4)	194 (26.1)	464.01**
11. 보석방 여부	28 (2.0)	140 (21.0)	0 (0.0)	354.56**
12. 가능한 처벌유형	340 (24.2)	234 (35.1)	66 (8.9)	140.77**
13. 감정/검사 결과	7 (0.5)	18 (2.7)	0 (0.0)	33.89**
14. 위험성	7 (0.5)	11 (1.6)	3 (0.4)	9.67**
15. 정당방어 주장	5 (0.4)	11 (1.6)	0 (0.0)	19.14**
16. 자기변호/항변	67 (4.8)	64 (9.6)	64 (8.6)	20.70**
17. 자백	96 (6.8)	67 (10.0)	40 (5.4)	11.99**
18. 묵비권 행사여부	7 (0.5)	9 (1.3)	3 (0.4)	5.98*
19. 유죄추정 견해	46 (3.3)	61 (9.1)	5 (0.7)	69.61**
20. 무죄추정 견해	33 (2.4)	50 (7.5)	2 (0.3)	66.93**
21. 피고승소 가능성	4 (0.3)	31 (4.6)	1 (0.1)	78.58**
22. 피고패소 가능성	2 (0.1)	41 (6.1)	0 (0.0)	123.95**
23. 합의가능성	0 (0.0)	25 (3.7)	0 (0.0)	81.16**

주 1: () 안의 비율은 각 국가에서 분석된 신문기사의 전체 갯수에 대한 비율이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1403, 미국은 667, 한국은 743 에 대한 비율이다.

주 2: $X^2_{df=2}$ 은 각 변인의 명시여부와 국가로 분할된 2x3 교차분할표에 기초한 통계치이다.

주 3: * p<.05; ** p<.01.

보고되는 대부분의 빈도자료들에는 통계적 유의도를 판단하는 X^2 통계치들이 함께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 통계치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분석에 사용된 신문기사의 총갯수가 2813 개에 달하므로 아주 극소한 빈도차이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의 해석은 X^2 통계치를 무시하고 빈도와 비율 자체의 크기차이에 의존하였다. 각 변인들의 빈도와 비율에서 국가간 차이를 파악한 후, 모든 변인들을 종합하여 국가간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한 “퍼기분석(unfolding analysis)”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이름

미국의 신문기사들이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비율(81.9%)이 네덜란드(29.2%)와 한국(48.7%)의 신문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보다는 빈도가 적고 네덜란드보다는 빈도가 높은 양상을 보여준다.

2) 피고인(용의자)의 성별

미국(77.2%)과 네덜란드(77.8%)의 신문기사들이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성별을 명시하는 빈도가 한국(19.7%)의 신문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3) 피고인(용의자)의 연령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연령에 대해서는 한국(66.2%)과 미국(68.2%)의 신문들이 네덜란드(51.5%)의 신문들보다 다소 높은 보도비율을 보여주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4) 피고인(용의자)의 기타 인적사항

기타 인적사항에는 교육수준, 결혼여부, 자녀의 유무, 출신지역, 직업 및 직위, 등이 포함된다.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기타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비율에서 한국의 신문들(86.4%)은 네덜란드(40.8%)와 미국(14.1%)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5) 피고인(용의자)의 구체적인 사생활

구체적인 사생활에는 내연의 관계, 친분관계, 주거형태, 월수입, 등이 포함된다.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구체적인 사생활을 보도하는 비율에서 한국의 신문들(0.9%)은 네덜란드(34.4%)와 미국(37.3%)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6) 피고인(용의자)의 전과

피고인(용의자)의 전과가 명시되는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언론의 영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인중의 하나이다.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전과를 보도하는 비율에서 한국의 신문들(2.4%)은 미국(12.7%)에 비하여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네덜란드(4.0%)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신문들이 다른 나라의 신문들에 비하여 피고인(용의자)의 전과를 명시하는 비율이 낮은 가능한 이유중에 하나는 한국의 범죄기사들 중 재범율이 낮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것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재범율이 비교적 낮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범죄만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신문들이 피고인(용의자)의 전과를 명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나라에서 화이트칼라 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 기사들 중에서 피고인(용의자)의 전과를 명시하는 비율을 산출해보았다. 네덜란드의 기사들중 피고인(용의자)의 전과가 명시된 기사의 수는 56개였는데, 그중에 2개가 화이트칼라 범죄였고, 나머지 54개는 살인, 강도 등의 일반범죄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피고인(용의자)의 전과가 명시된 기사 85개는 모두 살인, 강도 등의 일반범죄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피고인(용의자)의 전과가 명시된 기사 18개는 모두 살인, 강도 등의 일반범죄였다. 따라서 화이트칼라 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 기사들 중에서 피고인(용의자)의 전과를 명시하는 비율은 네덜란드가 4.1%, 미국이 12.9%, 한국이 3.1%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제외하고, 살인, 강도, 등의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집계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의 신문들은 네덜란드와 미국의 신문들에 비하여

피고인(용의자)의 전과를 명시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7) 피고인(용의자)의 여죄에 대한 의구심

피고인(용의자)의 여죄에 대한 의구심이 명시된 기사도 부정적인 선입견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공정한 재판의 위협이 될 수 있다. 피고인(용의자)의 여죄에 대한 의구심이 명시된 기사의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고(8.6%), 네덜랜드가 가장 낮으며(2.5%), 미국은 그 중간(6.3%)이지만, 전반적으로 모두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용의자)의 여죄에 대한 의구심이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는 경우는 일반범죄에서보다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국신문들이 보도하는 범죄사건 중에 화이트칼라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표 5>의 결과를 다시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와 일반범죄의 경우로 분리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범죄의 경우에 피고인(용의자)의 여죄에 대한 의구심이 언론에 보도되는 비율은 네덜랜드가 32/1308=2.4%, 미국이 41/656=6.2%, 그리고 한국이 34/589=5.8%였다. 반면에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에 피고인(용의자)의 여죄에 대한 의구심이 언론에 보도되는 비율은 네덜랜드가 3/95=3.2%, 미국이 1/9=11.1%, 그리고 한국이 30/154=19.5%였다.

8) 피고인(용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이나 묘사

피고인(용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이나 묘사를 신문기사의 내용에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용의자)의 범죄성을 부각하고 범죄의 가중성을 과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인(용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이나 묘사가 명시되는 비율은 미국이 가장 높고(16.5%), 네덜랜드(2.9%)와 한국(3.1%)은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9) 피고인(용의자)의 죄목

피고인(용의자)의 죄목이 명시된 기사의 비율은 세 나라가 공히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네덜랜드의

신문들은 97.9%, 미국은 96.3%, 한국은 98.9%였다.

10) 범행장소(위치)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명시된 기사의 비율은 네덜랜드(74.0%)와 미국(62.4%)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26.1%)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11) 피고인(용의자)의 보석방 여부

보석방 여부는 유죄·무죄의 여부, 유죄인 경우의 죄질의 심각성,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재력, 등에 대한 추측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정보이다. 보석방 여부가 명시된 기사의 비율은 미국(21.0%)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네덜랜드(2.0%)와 한국(0.0%)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2) 피고인(용의자)의 예상되는 처벌

피고인(용의자)의 예상되는 처벌을 명시하는 신문 기사는 소위 “단죄성 보도”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예상되는 처벌을 명시한 기사의 비율은 미국(35.1%)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네덜랜드(24.2%)와 한국(8.9%)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3) 피고인(용의자)의 정신감정 혹은 거짓말 탐지기 등의 검사결과

피고인(용의자)의 정신감정 혹은 거짓말 탐지기 등의 검사결과가 명시되거나, 그러한 검사를 수락 혹은 거부했는지의 여부는 유죄·무죄에 대한 추측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강한 정보이다. 그런데 세 나라 모두에서 그러한 정보가 명시된 신문기사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14) 피고인(용의자)의 위협성

피고인(용의자)의 위협성에 대한 언급도 가중성 보도의 일종으로서 유죄·무죄에 대한 추측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강한 정보이다. 모든 나라에서 피고인(용의자)의 위협성에 대한 언급이 기사중에 명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15) 피고인(용의자)의 정당방위성

피고인(용의자)의 정당방위성에 대한 언급은 피고인(용의자)에게 유리한 정보이지만 재판전에 언론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세 나라 모두에서 피고인(용의자)의 정당방위성에 대한 언급이 기사중에 명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16) 피고인(용의자)의 자기변호(항변)

피고인(용의자)의 자기변호(항변)에 대한 언급도 역시 피고인(용의자)에게 유리한 정보이지만 재판전에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항변은 증거력을 가지지 못하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을 통하여 법정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역시 편파를 유발할 수 있다. 세 나라 모두에서 피고인(용의자)의 자기변호(항변)에 대한 언급이 기사중에 명시되는 비율은 공히 모두 낮고, 세 나라에서 유사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17) 피고인(용의자)의 자백여부

피고인(용의자)의 자백여부가 보도되는 것은 편파적 언론보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된다. 세 나라 모두에서 피고인(용의자)의 자백여부에 대한 언급이 기사중에 명시되는 비율은 공히 모두 낮는데, 미국 (10.0%)의 신문들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18) 피고인(용의자)의 묵비권 행사여부

피고인(용의자)의 묵비권 행사여부는 유죄·무죄에 대한 성급한 예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이다. 세 나라 모두에서 피고인(용의자)의 묵비권 행사여부에 대한 언급이 기사중에 명시되는 비율은 공히 모두 낮다.

19) 피고인(용의자)의 유죄성에 대한 추정

피고인(용의자)의 유죄성에 대한 추정을 신문기사의 내용에 포함하는 것은 단죄성 보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미국(9.1%)의 신문들에 비해서 한국(0.7%)과 네덜란드(3.3%)의 신문들은 피고인(용의자)

의 유죄성에 대한 주장을 신문기사의 내용에 포함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한국의 신문들이 다른 나라의 신문들에 비하여 단죄성 보도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0) 피고인(용의자)의 무죄성에 대한 추정

피고인(용의자)의 무죄성에 대한 추정을 보도하는 것은 유죄성에 대한 주장을 보도하는 것과는 반대의 이유로 편파적일 수 있다. 미국(7.5%)의 신문들에 비해서 한국(0.3%)과 네덜란드(2.4%)의 신문들은 피고인(용의자)의 유죄성에 대한 주장을 신문기사의 내용에 포함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피고인(용의자)의 유죄성에 대한 추정비율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미국의 신문들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신문들에 비하여 더 판단적인(judgmental) 범죄보도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21) 피고인(용의자)의 승소가능성

피고인(용의자)의 승소가능성을 보도하는 것은 유죄성에 대한 주장을 보도하는 것과는 반대의 이유로 편파적일 수 있다. 미국(4.6%)의 신문들에 비해서 한국(0.1%)과 네덜란드(0.3%)의 신문들은 피고인(용의자)의 승소가능성을 신문기사의 내용에 포함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이 결과도 역시 미국의 신문들이 한국과 네덜란드의 신문들에 비하여 더 판단적인(judgmental) 범죄보도 양태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22) 피고인(용의자)의 패소가능성

피고인(용의자)의 승소가능성을 보도하는 것은 유죄성에 대한 주장을 보도하는 것과는 마찬가지로 이유로 편파적일 수 있다. 미국(6.1%)의 신문들에 비해서 한국(0.0%)과 네덜란드(0.1%)의 신문들은 피고인(용의자)의 승소가능성을 신문기사의 내용에 포함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특히 한국의 신문기사에서는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도 역시 미국의 신문들이 한국과 네덜란드의 신문들에 비하여 더 판단적인(judgmental) 범죄보도 양태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23) 피고인(용의자)의 합의(plea bargain) 가능성

피고인(용의자)의 합의(plea bargain)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은 묵비권 행사여부를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죄·무죄에 대한 성급한 예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이다. 세 나라 모두에서 피고인(용의자)의 합의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기사 중에 명시되는 비율은 공히 모두 극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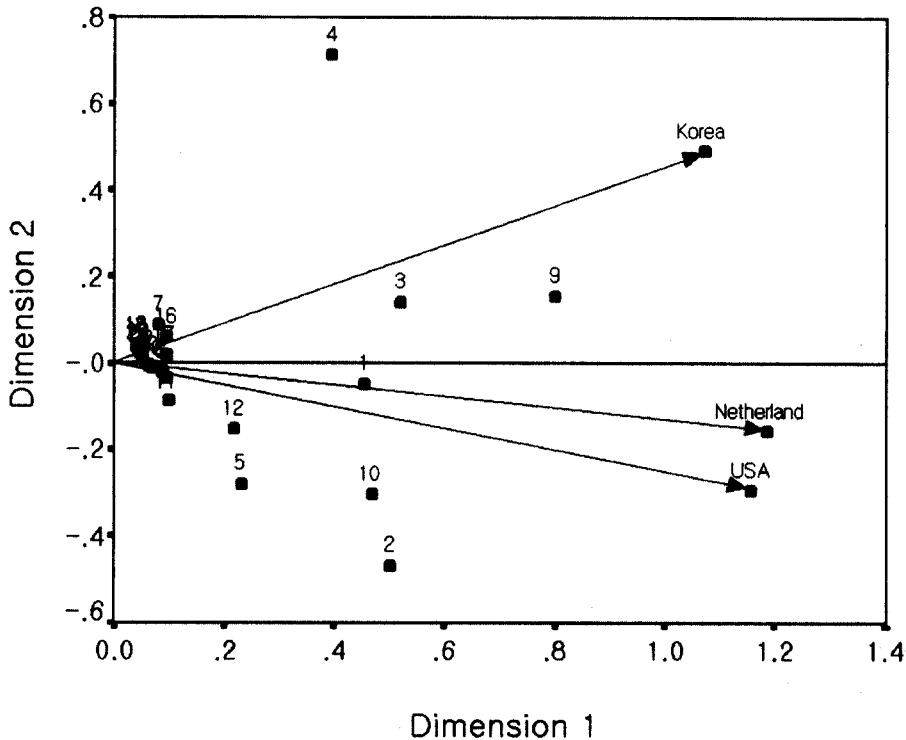
피고인(용의자) 변인들의 비율분포에 의한 퍼기분석

앞서 피고인(용의자)에 관한 23개의 변인들 각각에서 국가간 차이를 파악하였는데, 그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간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차원 퍼기분석(multidimensional unfolding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다차원 퍼기분석은 박광배(2000)에 기술된 절차 (내부분석: 퍼기

에 의한 것이고,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Douglas Carroll에 의해 1972년에 제작된 MDPREF를 사용하였다.

다차원 퍼기분석은 <표 5>에 제시된 보도비율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입력자료는 3x23의 직사각형 행렬자료였는데, 행은 국가를 의미하고, 열은 변인을 의미하며, 행열요소들은 <표 5>에 제시된 보도비율들이었다. 따라서 다차원 퍼기분석에서는 보도비율이 높은 것을 해당 국가의 신문들이 “선호하는” 정보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작은 갯수의 차원에서부터 점차로 큰 갯수의 차원을 지정하여 분석하고, 각 분석에서 산출되는 설명변량비율(proportion of variance accounted for)을 비교해본 결과, 2 차원해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차원 해법은 전체변량의 97%를 설명하였다. 피고인(용의자) 변인들에 대한 이차원 해법이 [그림 1]



(그림 1) 피고인(용의자) 변인들의 비율분포에 의한 퍼기분석

에 제시되었다. [그림 1]에서 변인들은 점으로 표시되었고, 국가는 벡터로 표시되었다. [그림 1] 도면 내부의 숫자들은 <표 5>의 변인숫자를 의미한다. 즉, 예를 들어 “9”는 “죄목”을 의미하며, “4”는 “기타인적사항”을 의미한다. 국가를 나타내는 벡터는 그 국가의 신문들이 범죄보도를 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국(Korea)의 신문들은 피고인(용의자)의 죄목 (“9”)을 많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USA)의 신문들은 역시 피고인(용의자)의 죄목(“9”)과 성별 (“2”)을 많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 첫번째 차원(Dimension 1)은 단지 비율의 크기를 의미하는 차원이며 별다른 의미가 없다. 즉, 첫번째 차원에서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두번째 차원(Dimension 2)은 국가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차원이다. 두번째 차원에서 윗쪽에 위치할수록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변인이고, 아래쪽에 위치할수록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는 변인이다.

[그림 1]을 보면 피고인(용의자)에 관한 변인들에서

전체적으로 한국 신문들의 보도양태가 미국과 네덜란드 신문들의 보도양태와 다르고, 미국과 네덜란드의 신문들은 상대적으로 서로 유사한 보도양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피해자에 관한 내용

신문기사의 본문내용 중에서 피해자에 관한 내용들이 <표 6>과 같이 집계되었다. <표 6>의 () 안의 비율은 각 국가에서 분석된 신문기사의 전체 갯수에 대한 비율이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1403, 미국은 667, 한국은 743에 대한 비율이다.

<표 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도를 판단하는 X^2 통계치들이 함께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 통계치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분석에 사용된 신문기사의 총갯수가 2813 개에 달하므로 아주 극소한 빈도차이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의 해석은 X^2 통계치를 무시하고 빈도와 비율 자체의 크기차이에 의존하였다. 각 변인들의 빈도와 비율에서 국가간 차이를 파악한

<표 6> 피해자에 대한 변인내용이 명시된 신문기사의 수

변인	네덜란드 (%)	미국 (%)	한국 (%)	$X^2_{df=2}$
24. 이름	223 (15.9)	261 (39.1)	35 (4.7)	288.90**
25. 성별	658 (46.9)	318 (47.7)	110 (14.8)	241.45**
26. 연령	496 (35.4)	269 (40.3)	182 (24.5)	43.03**
27. 기타 인적사항	367 (26.2)	56 (8.4)	158 (21.3)	87.26**
28. 사생활	237 (16.9)	125 (18.7)	2 (0.3)	145.26**
29. 구체적 피해사실	285 (20.3)	225 (33.7)	105 (14.1)	82.98**
30. 긍정적 사실/묘사	5 (0.4)	41 (6.1)	0 (0.0)	111.02**
31. 피해자에 대한 비난	15 (1.1)	14 (2.1)	1 (0.1)	12.85**

주 1: () 안의 비율은 각 국가에서 분석된 신문기사의 전체 갯수에 대한 비율이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1403, 미국은 667, 한국은 743 에 대한 비율이다.

주 2: $X^2_{df=2}$ 은 각 변인의 명시여부와 국가로 분할된 2x3 교차분할표에 기초한 통계치이다.

주 3: * p<.05; ** p<.01.

후, 모든 변인들을 종합하여 국가간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한 “퍼기분석 (unfolding analysis)”을 수행하였다.

24) 피해자의 이름

미국의 신문기사들이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비율(39.1%)이 네덜란드(15.9%)와 한국(4.7%)의 신문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한국의 경우는 세 나라 중 가장 그 비율이 낮다.

25) 피해자의 성별

미국(47.7%)과 네덜란드(46.9%)의 신문기사들이 피해자의 성별을 명시하는 빈도가 한국(14.8%)의 신문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26)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연령에 대해서는 네덜란드(35.4%)과 미국(40.3%)의 신문들이 한국(24.5%)의 신문들보다 높은 보도비율을 보여주고, 네덜란드와 미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27) 피해자의 기타 인적사항

기타 인적사항에는 교육수준, 결혼여부, 자녀의 유무, 출신지역, 직업 및 직위, 등이 포함된다. 앞서,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기타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비율에서 한국의 신문들(86.4%)이 네덜란드(40.8%)와 미국(14.1%)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한국(21.3%)이 미국(8.4%)보다 높고 네덜란드(26.2%)와 유사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28)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생활

구체적인 사생활에는 내연의 관계, 친분관계, 주거형태, 월수입, 등이 포함된다.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구체적인 사생활을 보도하는 비율에서 한국의 신문들(0.9%)은 네덜란드(34.4%)와 미국(37.3%)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한국(0.3%)이 미국(18.7%)과 네덜란드

(16.9%)에 비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9)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사실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가증성 보도가 될 소지가 있다.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사실을 기사중에 명시하는 비율은 미국의 신문들이 가장 높고 (33.7%), 한국의 신문들이 가장 낮은 것(14.1%)으로 나타났다. 역시 한국의 신문들이 미국과 네덜란드의 신문들에 비하여 가증성 보도의 경향이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0)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이나 묘사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 사실이나 묘사를 명시하는 것도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사실을 보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증성 보도가 될 소지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이나 묘사가 기사중에 명시된 비율도 역시 미국의 신문들이 가장 높고(6.1%), 한국의 신문들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역시 한국의 신문들이 미국과 네덜란드의 신문들에 비하여 가증성 보도의 경향이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다.

31) 피해자에 대한 비난(blaming)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보로 작용될 수 있다. 세 나라에서 공히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포함된 신문기사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로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피해자 변인들의 비율분포에 의한 퍼기분석

앞서 피해자에 관한 8개의 변인들 각각에서 국가간 차이를 파악하였는데, 그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간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차원 퍼기분석(multidimensional unfolding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용의자)에 관한 변인들에 대한 퍼기분석과 동일한 절차가 사용되었는데, 역시 2차원 해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차원 해법은 전체변량의 97%를 설명하였다. 피해자 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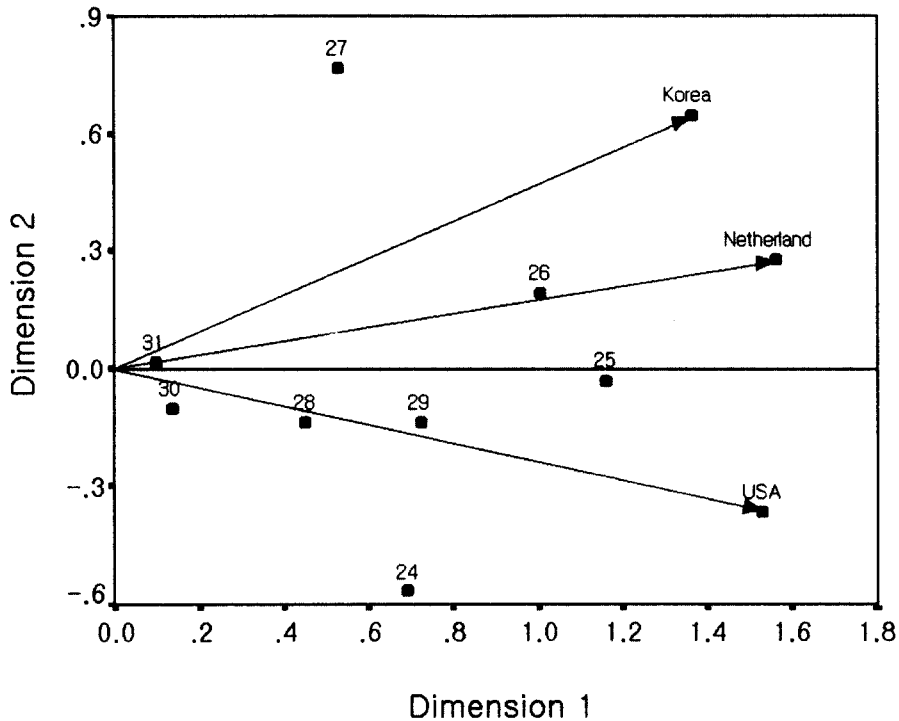


그림 2. 피해자 변인들의 비율분포에 의한 퍼기분석

에 대한 이차원 해법이 [그림 2]에 제시되었다. [그림 2]에서 변인들은 점으로 표시되었고, 국가는 벡터로 표시되었다. [그림 2] 도면 내부의 숫자들은 <표 6>의 변인숫자를 의미한다. 즉, 예를 들어 “24”는 “이름”을 의미하며, “27”은 “기타인적사항”을 의미한다. 국가를 나타내는 벡터는 그 국가의 신문들이 범죄보도를 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국(Korea)의 신문들은 피해자의 연령(“26”)을 많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USA)의 신문들은 역시 피해자의 성별(“25”)을 많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2]에서 첫번째 차원 (Dimension 1)은 단지 비율의 크기를 의미하는 차원이며 별다른 의미가 없다. 즉, 첫번째 차원에서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두번째 차원(Dimension 2)은 국가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차원이다. 두번째 차원에서 왼쪽에 위치할수록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변인이고, 아래쪽에 위치할수록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는 변인이다.

[그림 2]를 보면 피해자에 관한 변인들에서 전체적으로 세 국가의 신문들이 제각기 조금씩 다른 보도양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국가간 차이에서 법문화와 법제도에 따른 특징적인 양상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관한 변인들에서의 국가간 차이는 법문화 혹은 법제도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논 의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 관하여 세 가지 전제를 유

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개연성을 논하는 것이며, 결과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문에 의한 재판의 결과는 공정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고문에 의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즉,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절차에 내재하는 개연성을 논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가 금지하는 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개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 재판의 공정성이 반드시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O. J. Simpson의 재판은 생중계되기도 하였지만, 그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판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특정한 정보에 대한 언론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개연성에 기초한 것이며,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셋째, 재판전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선형적이고 규범적인 당위이다(만약 어떤 나라의 법이 “판결은 언론의 의사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그것이 당위가 될 것이다). 미국 등의 국가들이 언론보도금지규정을 만든 것은 언론보도의 영향을 현실세계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이 문제는 규범적인 문제이므로 다만 개연성에 기초하여 몇몇 국가들이 그러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실험실 밖의 현실세계에서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규명될 가능성이 없는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마치 실증과학의 연구대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것을 실증적인 문제로 다룬다면 그야말로 ‘잘못된 질문(wrong question)’의 대표 케이스가 될 것이다.

본 논고는 신문에 보도되는 범죄기사를 국가간-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신문이 다른 나라의 신문에 비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 보도 양태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범죄 보도 행태가 전통적인 법문화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보도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나 지침의 유형에 기인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를 위하여,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그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재판

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라고 규정한 변인들(예를 들어, 전과사실, 성격과 평판, 진술(자백), 검사/테스트 결과, 자인홍정, 제 3자의 소견, 등)이 신문에 보도되는 빈도를 비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집계된 빈도자료를 “언론보도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빈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피고인(용의자)에 관한 보도내용

[그림 1]에 나타난 양상으로보아, 국가마다 피고인(용의자)에 관련된 신문보도 양태가 다른 것은 시민법 전통과 보통법 전통으로 구분되는 법문화/전통의 차이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법규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법규정과 제도는 피고인(용의자)의 명예훼손을 예방할 목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미국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므로,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에 의해서 피고인(용의자)에 관련된 신문보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한국의 신문들은 재판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높은 보도양태를 보인다. 즉, <표 4>를 보면 한국의 신문들이 다른 두 나라의 신문들에 비해서 재판전 보도(pretrial publicity)를 월등하게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와 미국의 신문기사들은 내용유형에서 서로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재판전 보도와 재판중 보도의 빈도를 합산하는 경우, 네덜란드의 신문기사들 중 82.5%, 미국의 신문기사들 중 75.3%, 한국의 신문기사들 중 92.3%가 재판전 보도이거나 재판중 보도였다(미국의 자료중 내용유형이 불분명한 60개의 기사를 모두 재판전이나 재판중인 보도유형이라고 간주하더라도 이 비율은 한국의 경우보다 더 낮다). 재판전이나 재판중 보도라고 해서 모두 재판에 불공정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결과는 한국의 신문이 다른 나라들의 신문들에 비해서 재판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월등히 더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개연성이 높은 재판전 보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제로 그러한 보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비된 것이 아니므로 재판전 보도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신문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실제로 더 많이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각 변인에 대한 결과들을 좀 더 세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미연방 사법심의위원회와 미국 변호사협회가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 조항들 중에는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아마도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의 신문기사들이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빈도가 다른 나라의 신문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신문들이 미국의 신문들보다 범죄기사에서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이름을 적게 명시하는 것은 아마도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조항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익명보도주의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판사가 재판전에 피고인의 이름을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해서 판결에 편파가 생길 것으로 믿어지지는 않는다. 미국의 사법부는 익명보도주의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연방 사법심의위원회와 미국 변호사협회가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 조항들 중에는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성별과 연령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아마도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성별과 연령을 공개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의 신문기사들이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성별과 연령을 명시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네덜랜

드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이름을 보도하는 빈도는 낮으면서도 성별을 보도하는 빈도는 매우 높다. 네덜랜드의 법규정은 “생활환경 속에서 용의자의 신분이 파악될 수 있는 이름, 연령, 직업, 등의 어떠한 정보도 보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성별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아마도 이름, 연령, 직업과는 달리 성별은 “익명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까닭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신문들이 미국이나 네덜랜드의 신문들보다 범죄기사에서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성별을 적게 명시하는 것도 이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조항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 - 제 312조는 범죄혐의자의 이름과 더불어 성별을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명문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문의 경우, 연령의 보도비율(66.2%)이 이름(48.7%)과 성별(19.7%)의 보도비율보다 월등히 높는데, 그 이유는 익명보도주의를 명시한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 - 제 312조에 연령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형법의 익명보도주의는 범죄혐의자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름, 성별, 사진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한국의 신문들이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기타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결과(86.4%)는 만약 “기타 인적사항”에 의해서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다면, 현재 한국 신문들의 보도행태는 익명보도주의의 취지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신문에 보도되는 “기타 인적사항”에 의하여 신문독자들이 용의자의 신원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경험주의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현행 형법조항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에 한국의 신문들은 미국과 네덜랜드의 신문들에 비해서 피고인(용의자)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0.9%).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잠재적으로 그 개인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형성시키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공개된 사생활이 범죄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사생활의 보도에서 한국의 신문들이 미국과 네덜랜드의 신문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인(용의자)의 전과에 대한 보도는 세 국가에서 공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물론 이 비율들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문에 보도되는 범죄피고인 혹은 용의자들 중에 누가 실제로 전과를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실제 전과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문기사에 전과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이 피고인 혹은 용의자가 실제로 전과가 없기 때문인지, 실제로 전과가 있지만 언론이 정보수집에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신문이 전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표 5>의 비율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표 5>의 자료가 전과를 보도하는 경향에 대하여 다만 정황적인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서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전과를 보도하는 비율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은 한국신문들의 범죄보도가 다른 나라 신문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특별히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미국(12.7%)의 경우에는 피고인 혹은 용의자의 전과를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명시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2.4%)과 네덜랜드(4.0%)에 비하여 높은 보도비율을 보여준다.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용의자)의 여죄에 대한 의구심이 명시된 기사의 비율에서 세 국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네덜랜드 신문에 비하여 한국신문들이 피고인(용의자)의 여죄에 대한 의구심을 기사에 명시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군다나, 한국의 신문들은 일반범죄사건의 보도에 비하여 화이트칼라 범죄사건의 보도에서 피고인(용의자)의 여죄에 대한 의구심을 명시하는 비율이 무려 3배(5.8% v. 19.5%)가 넘는다. 한국신문의 이러한 보도행태는 화이트칼라

범죄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공정한 선입견을 유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신문들에 비해서 한국과 네덜랜드의 신문들은 피고인(용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이나 묘사를 신문기사의 내용에 포함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피고인(용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이나 묘사가 명시된 기사들 중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기사의 수는 네덜랜드에서 1개, 미국에서 1개, 한국에서 4개였다). 또한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명시되는 경우는 범죄의 계획성, 가중성, 대담성, 등을 부각시킬 개연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인이 범행장소를 사전에 물색하였고, 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강제로 이송하였다는 추측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잠재적으로 범인 혹은 범행의 가중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런데,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명시하는 비율에서도 한국의 신문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의 신문들이 다른 나라의 신문들에 비하여 피고인(용의자)의 범죄성을 부각하고 범죄의 가중성을 과장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세국가에서 공히 범죄기사의 과반수 이상이 재판전 보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용의자)의 죄목이 명시된 기사들 중 상당수는 소위 “단죄성 보도”일 가능성이 높다. 죄목이 명시된 기사의 비율은 세국가에서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세 국가가 모두 거의 유사하므로 한국의 신문들이 다른 나라의 신문들에 비하여 단죄성 보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일체의 개인적 의견 및 소견”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네덜랜드의 경우에는 “유추된 결론”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명문규정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한국에 비해서 이 나라들에서 단죄성이 있는 “가능한 처벌유형”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만약 유죄판결을 받는다면(if convicted, ...)”의 단서와 함께 보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서와

함께 예상되는 처벌이 보도되는 경우도 단죄성 보도의 심리적 영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합의가능성이 보도되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추측을 하기 쉬운데, 합의가능성에 대한 보도비율에서도 한국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 수치들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사건에서 피고인(용의자)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사건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Diamond(1983)에 의하면 유죄판결이 난 모든 형사사건의 80-90%가 자인홍정(plea bargain)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부 유형의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해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문에서 피고인(용의자)의 합의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기사중에 명시되는 비율이 극히 낮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한국의 신문들이 다른 나라의 신문들에 비해서 단죄성 보도를 더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서 일반적으로 언론의 범죄기사는 검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묵시적으로 용의자나 피의자가 이미 유죄임을 함축한다(Drechsel, Netteburg, & Aborisade, 1980; Hans & Dee, 1991; Ogloff & Vidmar, 1994; Otto, Penrod, & Dexter, 1994)는 연구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표 5>의 “자기변호/항변”에 관한 결과는 학계의 그러한 일반적 견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세나라 모두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피고인(용의자)의 시각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피고인(용의자)에 관한 보도내용의 결과를 요약하면,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제도가 정비된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신문의 보도양태가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난다. 어쩌면 그러한 법제도는 언론의 보도양태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정비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범죄피의자의 명예보호를 목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있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신문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양태를 적게 보이고 있지만,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여죄를 의심하는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하여 편파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에 관한 보도내용

미연방 사법심의위원회와 미국 변호사협회가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 조항들 중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성별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아마도 피해자의 이름과 성별을 공개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의 신문기사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성별을 명시하는 빈도가 다른 나라의 신문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는 명시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문들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성별을 더 빈번히 보도하고 있다. 한국신문들이 다른 나라의 신문들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향이 강한 이유는 아마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므로서 생길 수도 있는 피해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신문의 경우, 피해자 연령의 보도비율이 피해자 이름(4.7%)과 피해자 성별(14.8%)의 보도비율보다 월등히 높는데, 그 이유는 연령이 이름과 성별보다 더 익명성을 가진 정보라고 간주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그것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보도되는가에 따라서 재판에 대하여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에 대하여 동정적인 관점에서 사생활이 보도되면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도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신문들은 피해자에 대한 잠재적인 명예훼손 가능성을 고려하여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사건 당사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를 매우 신중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에 나타난 양상으로 보아, 국가마다 피해

자에 관련된 신문보도 양태가 다른 것은 법과 관련된 문화나 제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문화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신문들이 미국과 네덜랜드의 신문들에 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비율이 낮다. 이러한 양상은 아마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시각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서구문화에 비하여 한국문화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따라서 언론이 피해자의 명예보호에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의 문화차이도 매우 중요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결론

실제의 범죄사건에 대한 실제의 언론보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내용들이 재판결과에 영향 줄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실험연구들의 결과를 해석하고 현실세계로 일반화하기 위한 준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의 범죄사건에 대한 실제의 언론보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내용들이 재판결과에 영향 줄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간 비교를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재판에 대한 언론보도의 불공정한 영향은 특정한 법제도와 법문화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배심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큰 차이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각 국가의 언론매체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보도관행이나 보도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네덜랜드, 미국의 신문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가지 두드러진 결과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미국)의 신문들이 의외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보도양태를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한국의 신문

들은 외국의 신문들에 비하여 대단히 신중한 범죄보도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한가지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재판의 공정성보다 사건당사자들의 명예가 더 중요시되는 법제도적 가치관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언론규제에 대한 법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혹은 법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신문의 보도양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법문화/전통이 시민법 전통인가, 아니면 보통법 전통인가의 구분은 신문의 범죄보도양태와 거의 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신문의 신중성에 대한 두 가지 예외가 발견되었는데, 한가지는 재판전 보도가 많다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보도에서 편파를 조장할 수 있는 보도양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두 가지 예외적인 문제에 대하여 언론기관의 신중한 고려가 요망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문기사들에 국한되었고, 신문 기사 중에서도 문자정보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을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전체로 일반화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에 대하여 단직성 보도와 가중성 보도를 할 개연성이 더 높은 언론매체는 문자매체가 아니라 전파매체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문에 게재되는 사진들의 내용분석이 요구되고(본 논고에서는 한정된 지면 때문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신문기사 속에 포함된 사진들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또한 본 연구와 유사한 국가간 비교연구를 텔레비전 매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필요가 절실하다.

언론의 힘은 대중으로부터 어떠한 저항도 유발하지 않고, 심지어는 대중이 자신들의 행동이나 판단이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의 의도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데 있다(Surette, 1998; Skidmore, 1995; Stephenson-Burton, 1995). 다시 말해서 언론의 힘은 심리적인 힘이다. 언론의 이러한 심리적 영향력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재판의 결과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언론이 보도하는 관행이 법전통/문화에 기인하는 경우와, 제도적 규제/규정의 유형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대

처방안이 각기 다르게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법과 사법제도가 현대화되고 보다 정교하게 발전,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법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하여 극히 미미하나마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권순택 (2000). 진실이라도 명예훼손 성립. *신문과 방송*, 352호. 한국언론재단.
- 박광배 (2000). *다차원적도법*. 서울: 과학교육사.
- Bodenhausen, G. V. (1988). Stereotypic biases in social decision making and memory: Testing process models of stereotype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726-737.
- Carroll, J. S., Kerr, N. L., Alfini, J. J., Weaver, F. M., MacCount, R. J., & Feldman, V. (1986). Free press and fair trial: The role of behavioral research. *Law and Human Behavior*, 10, 187-202.
- Costantini, E. & King, J. (1980/1981). The partial juror: Correlates and causes of prejudgment. *Law and Society Review*, 15, 9-40.
- DeLuca, A. J. (1979). Tipping the scales of justice: The effects of pretrial publi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 Diamond, S. S. (1983). Order in the court: Consistency in criminal-court decisions. In C. J. Scheirer & B. L. Hammonds (Eds.), *The Master Lecture Series, Volume 2: Psychology and the Law*.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illehay, R. C. & Nietzel, M. T. (1985). Juror experience and jury verdicts. *Law and Human Behavior*, 9, 179-191.
- Doob, A. N. (1985). The many realities of crime. In A. N. Doob & E. L. Greenspan (Eds.), *Perspectives in Criminal Law*. Aurora, Ontario: Canada Law Book.
- Drechsel, R., Netteburg, K. & Aborisade, B. (1980). Community size and newspaper reporting of local courts. *Journalism Quarterly*, 57, 71-78.
- Gleason, J. M. & Harris, V. A. (1976). Group discussion and defendant's socioeconomic status as determinants of judgments by simulated juro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6, 186-191.
- Greene, E. & Loftus, E. F. (1984). What's new in the news? The impact of well publicized news events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ourtroom trial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5, 211-221.
- Greene, E. & Wade, R. (1988). Of private talk and public print: General pre-trial publicity and juror decision-making.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 123-135.
- Hamilton, D. L., Sherman, S. J., & Ruvolo, C. M. (1990). Stereotype-based expectancies: Effects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46, 35-60.
- Hans, V. P. & Dee, J. L. (1991). Media coverage of law: It's impact on juries and the public.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 136-149.
- Hoiberg, B. C. & Stires, L. K. (1973). The effect of several types of pretrial publicity on the guilt attributions of simulated juro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 267-275.
- Humphries, D. (1981). Serious crime news coverage and ideology: A content analysis of crime coverage in a metropolitan paper. *Crime and Delinquency*, 27, 191-205.
- Hvistendhl, J. K. (1979). The effect of placement of biasing information. *Journalism Quarterly*, 56, 863-865.
- Imrich, D. J., Mullin, C., & Linz, D. (1995). Measuring the extent of prejudicial pretrial publicity in major American newspapers: A content analysis. *Journal of Communication*, 45, 94-117.
- Johnson, H. M. (1994). Processes of successful intentional

- forgetting. *Psychological Bulletin*, 116, 274-292.
- Kalven, H. & Zeisel, H. (1968). *The American Jury*. Boston: Little, Brown.
- Kline, F. G. & Jess, P. H. (1966). Prejudicial publicity: Its effects on law school mock juries. *Journalism Quarterly*, 43, 113-116.
- Kramer, G. P., Kerr, N. L., & Carroll, J. S. (1990). Pretrial publicity, judicial remedies, and jury bias. *Law and Human Behavior*, 14, 409-438.
- Linz, D. G. & Penrod, S. (1992). Exploring the first and sixth amendments: Pretrial publicity and jury decision making. In D. K. Kagehiro & W. S. Lauf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Law*. New York: Springer-Verlag.
- Moran, G. & Cutler, B. L. (1991). The prejudicial impact of pretrial public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345-367.
- Ogloff, R. P., & Vidmar, N. (1994). The impact of pretrial publicity: A study of compare the relative effects of television and print media in a child sex abuse case. *Law and Human Behavior*, 18(5), 507-525.
- Otto, A. L., Penrod, S., & Dexter, H. (1994). The biasing impact of pretrial publicity on juror judgment. *Law and Human Behavior*, 18, 453-470.
- Padawer-Singer, A. M. & Barton, A. H. (1975). The impact of pretrial publicity on jurors' verdicts. In R. J. Simon (Eds.), *The Jury System in America: A Critical Overview*. Beverley Hills: Sage.
- Pennington, N. & Hastie, R. (1988). Explanation-based decision making: Effects of memory structure on judgmen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4, 521-533.
- Riedel II, R. G. (1993). Effects of pretrial publicity on male and female jurors and judges in a mock rape trial. *Psychological Reports*, 73, 819-832.
- Rumsey, M. G. (1976). Effect of defendant background and remorse on sentencing judgm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6, 64-68.
- Schul, Y. & Burnstein, E. (1985). When discounting fails: Conditions under which individuals use discredited information in making a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9, 894-903.
- Skidmore, P. (1995). Telling tales; Media power, ideology and the reporting of child sexual abuse in Britain. In D. Kidd-Hewitt & R. Osborne (Eds.), *Crime and the Media: The Post-Modern Spectacle*. London: Pluto Press.
- Stebly, N. M., Besirevic, J., Fulero, S. M., & Jimenez-Lorente, B. (1999). The effects of pretrial publicity on juror verdicts: A meta-analytic review. *Law and Human Behavior*, 23, 219-235.
- Stephenson-Burton, A. E. (1995). Through the looking glass: Public images of white collar crime. In D. Kidd-Hewitt & R. Osborne (Eds.), *Crime and the Media: The Post-Modern Spectacle*. London: Pluto Press.
- Sue, S., Smith, R. E., & Gilbert, R. (1974). Biasing effects of pretrial publicity on judicial decis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 163-171.
- Surette, R. (1998). *Media, Crime, and Criminal Justice: Images and Realities*. Belmont, CA: West/Wadsworth.
- Swann, W. B., Jr., Giuliano, T., & Wegner, D. M. (1982). Where leading questions can lead: The power of conjecture i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025-1035.
- Tans, M. D. & Chaffee, S. H. (1966). Pretrial publicity and juror prejudice. *Journalism Quarterly*, 43, 647-654.

1 차원고접수일 : 2001. 10. 23

최종원고접수일 : 2001. 11. 15

A Comparative Content Analysis of Crime Reports in Korean, Dutch and U.S. newspapers

Kwang B. Park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otential for pretrial publicity to create or exaggerate anti-defendant bias in community members has been well-established. Aware of these biasing effects, organizations such as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nd the U.S. Justice Department have provided guidelines for lawyers concerning types of information that should not be disseminated prior to trial. Media guidelines for police and prosecutors also exist in the Netherlands, but they differ somewhat from the U.S. guidelines. On the other hand, Korean criminal law contains a provision for media regulation which is purported to protect the defendant's fame in his/her community. Korean law does not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bias caused by media and introduced into the court eventually to damage the fairness of the trial. Consequently, it is hypothesized that the nature of crime reporting is qualitatively differ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To test this, a comparative content analysis of crime reports in Korean, Dutch and U.S. newspapers was conducted. The content of text was coded to reflect the nature of the statement. Statements about defendants (suspects) and victims were coded. Types of statements included reports of demographic information,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zations, and statements made by the suspect or victim. An examination of over 2813 articles from the three countries revealed that media accounts of crimes are more a function of the intended purpose of legal provisions and social values attached to defendants and victims of the particular country rather than a function of the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tradition (civil v. common law) of the legal system.

Key words : pretrial publicity, news media, content analysis, international comparison,